

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 구축

희망의 새시대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보도일시 | 2016.3.15(화) 10:00 | 배포일시 | 2016.3.15(화) 08:00 |
| 담당과장 |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 이형렬 (044-215-4750) | 담당자 | 임재정 서기관(044-215-4751) j2lim@korea.kr |

'16.3월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개정안 시행

◇ '16.3.15(화) 국무회의를 거쳐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」(15.12월 입법예고)이 확정되었으며, 관보게재(공포)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

* 시행령 위입사항을 담은 「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」도 같은 날 시행 예정

(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획기적 확대: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)

□ 「외국환관리법」(1961~1999), 「외국환거래법」(1999~현재)을 거치는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던 증권, 보험 등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.

○ 지금까지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,

○ 앞으로는 해당 업권별 母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(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·수령, 외화예금 등 일부 업무 제외).

※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증권금융,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여타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,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.

□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이 확대되고,

○ 국내기업 및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(“소액 외화이체업” 허용을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)

-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이체업자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액*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인당 건별 3천불이내, 연간 2만불 이내

- 지금까지는 은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이체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이체업자를 통해서도 이체가 가능해진다.
- 외화이체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체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,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이체업의 세부사항 등은 개별 업무협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.

※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요건을 대폭 완화(10억원 이상 → 3억원 이상)하는 한편,

-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체업자의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정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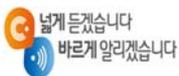
- 핀테크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체수수료 부담(1백만원 송금시 3~4만원)이 줄어들고, 음성적 외환송금(환치기 등)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(기타)

-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환전업의 등록·관리·감독권한을 “관세청”으로 일원화하여, 앞으로 환전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* 하위규정 제정, 환전영업자 안내 등을 고려, '16.4.1일 시행 예정

-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


참고

금융업권별 외국환업무범위

| 업종 | 근거법령 | 종전 가능업무 (포지티브 방식) | 개정 후 제외업무* (네거티브 방식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은행 | ▪ 은행법, 농협법, 산업은행법 등 | ▪ 모든 업무 | - |
| 체신관서 | ▪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| ▪ 환전 ▪ 외국통화표시 우편환 매입 ▪ 소액지급 등 | |
| 종금사 | | ▪ 예금 이외의 모든 업무 | ▪ 외화예금 |
| 증권사 신탁회사 | ▪ 자본시장법 | ▪ 증권매매 ▪ 파생상품매매 ▪ 기업금융관련 환전 등 | ▪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·수령 ▪ 외화예금 |
| 한국증권금융 | | (외국환업무 불가능) | |
| 보험회사 | ▪ 보험업법 | ▪ 외화표시 보험 ▪ 외화대출 등 | |
|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| ▪ 상호저축은행법 ▪ 신용협동조합법 | ▪ 환전 | ▪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·수령 |
| 새마을금고 | ▪ 새마을금고법 | (외국환업무 불가능) | ▪ 금전대차 중개 |
| 여전사 | ▪ 여신전문금융업법 | ▪ 외화대출 ▪ 외화표시 시설대여 등 | ▪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·수령 ▪ 외화예금 |
| 전자지급결제 대행회사(PG) | ▪ 전자금융거래법 | ▪ 경상거래 결제 | ▪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·수령 ▪ 외화예금 ▪ 외화증권/대외지급 수단의 발행·매매 |

* 해당 금융기관의 설치근거법령(예: 자본시장법, 보험업법 등)에 따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가능